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3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2. 11.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18.
경제도시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최홍린 의원 등 8명(박종길, 고명욱, 서보영, 이선주, 김장관, 도하석, 이영빈)

○ 발의일자: 2022. 11. 4.(금)

○ 회부일자: 2022. 11. 4.(금)

○ 검토기간: 2022. 11. 4.(금) ~ 11. 9.(수)

2. 제안이유

○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및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신고체계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1조)

4.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2. 11. 4. ~ 2022. 11. 15.)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마련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임.

○ 2020년 5월에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하는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어린이의 안전확보를 위한 구청장과 보호자 및 구민의 책무, 어린이안전교육의 실시 방법,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통한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 등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현장조사)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
2. 어린이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③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협조의무 등)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장소 중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관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계획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어린이안전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안전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점검·제출·보고, 시행 결과의 제출·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